



재가센터 요양보호사 월례회의

2024년 09월 25일 17시
바야다 재가센터 4층 회의실

1. 논의사항 및 공지사항

2. 노인인권보호지침

- 노인인권과 노인권리보호에 대해 설명한다.
- 노인학대 유형에 대해 설명한다.
-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을 실천한다.



*본 자료는 바야다홈헬스케어의 독자적인 저작물로서, 무단 복제·배포·방송 또는 전송을 금합니다.

주요 공지 사항 [중요!!]

- ❖ 수급자 가정 내 보관파일 관리: 비상연락망 내용 숙지 및 최신자료 유지
- ❖ 종료태그 시 특이사항 입력 (주 1회): 10월 1일, 3일, 9일 공휴일 근무 시 (보호자 요청 있을 경우) 일정 사회복지사에게 알리기
- ❖ 환수대상: 수급자 병원 입원기간, 요양보호사 병원 진료시간 중, 해외 출입국 날 태그를 한 경우 (수급자/요양보호사)
- ❖ 태그 특이사항 필수 입력 사항
 - ✓ 주 1회 상태변화 입력 (5주 인 경우 주1회 씩 5번 입력)
 - ✓ 수급자의 신체 특이사항 입력, 안전관리 지침 내용을 입력
 - ✓ 주말, 공휴일, 연장 근무 시 사유: 예)보호자가 요청한 사유를 입력



논의사항, 공지사항(1)

❖ 2024년 10월 수급자 안전관리 지침

- ✓ 환절기 호흡기질환 조심하기, 10월 1일, 3일, 9일 공휴일 돌봄 공백 상의하기
- ✓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감염예방 (손 씻기, 마스크 착용)

❖ 2024년 건강검진결과서 제출

①신체계측 ②혈액검사 ③소변검사 ④X-레이촬영 ⑤종합소견

❖ 영양보호사 만족도조사 협조 요청

- ✓ 15일 급여명세서와 함께 전송되는 만족도조사 링크 참여 부탁드립니다.
- ✓ 만족도 조사는 매월 통합하여 직원 회의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.



논의사항, 공지사항(2)

❖ 2024년 법정 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안내

[2024년 (하반기)법정 의무교육 수강방법안내]

- (1)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(2024)
- (2)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
- (3)행복의 공식) 퇴직연금 교육
- (4)(고민영수증) 김지민, 박영진과 함께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
- (5)생생고민톡 김기리, 윤태진과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
- (6)(고민영수증) 김지민, 박영진과 함께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
1.한국보건복지인원외 의무교육



2. 아이디/비밀번호 입력후 로그인



3. 과정선택 및학습

- 1-6번 교육을 신청한 후
- 학습하기/수료증 클릭하여 학습하기 눌러서 동영상 시청하기
- 완료율 100% 출력하여 사회복지사에 제출하기



논의사항, 공지사항(3)

❖ **요양보호사 만족도조사 협조 요청**

✓ 15일 급여지급 후 만족도조사 링크 단톡 방 공지

❖ **2024년 8월 직원 만족도조사 내용 공유**

질문: 요양보호사 월근무 시간60시간을 년720시간으로 변경하면 좋겠습니다.

답변: 먼저, 근로기준법에 '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,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면 주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' 라고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, 월 60시간은 근로자 이익을 위해 근로기준법 내에서 정한 기준입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재가요양 직무 특성상 수급자의 입원, 여행, 개인사정 등으로 계약 내 근무 시간 임의 변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월 60시간 근무시간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연간 720시간으로의 변경은 법령이나 규제 변경과 관련 있는 사안이라 단순한 사안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논의사항, 공지사항(4)

❖ **2024년 법정 의무교육 10월 까지 완료 예정입니다.**

수료증을 취합하여 구청에 보고할 예정이므로 교육수료 부탁드립니다.

❖ **2024년 10월 25일 요양보호사 월례회의 진행**

월례회의 참석은 요양보호사 업무 중 필수사항 입니다.

또한 회의참석, 교육이수 등은 바야다 우수직원 선정 시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



노인인권보호지침

2024년 9월 요양보호사 교육자료

[교육 목표]

1. 노인인권과 노인권리보호에 대해 설명한다.
2. 노인학대 유형에 대해 설명한다.
3.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을 실천한다.



*본 자료는 바야다홈헬스케어의 독자적인 저작물로서, 무단 복제·배포·방송 또는 전송을 금합니다.

인권 감수성과 노인 인권

- ✓ 인권 :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,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
- ✓ 인권 감수성: 인권문제를 인식하는 감성. 즉,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인권문제로 민감하게 느끼는 것.



‘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’

특히 학대피해노인은 사회적 약자로 취약한 인권 사각지대에 있기에
이들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함.

요양보호사는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노인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함!



노인권리보호: 재가노인 인권 보호

① 생존권과 경제권 보호

공적연금과 경제활동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.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.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.

② 건강권 보호

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, 노인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.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, 예방,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재가 노인의 건강 유지와 치료권을 보장하고,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서비스를 통해 노인이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.

③ 교육·문화권 보호

자신의 능력에 맞게 교육을 받고 여가와 문화생활 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. 노인복지관, 평생교육원, 경로당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, 문화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.

④ 주거 환경권보호

지역사회 내의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. 지역사회와의 접근성이나 통합성 강화, 개인의 사생활 보호, 삶의 질 향상 등은 주거 개선과 환경 보호의 효과이다. 법령에서는 긴급전화의 설치,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, 노인학대신고 의무와 절차, 응급조치의 의무 등을 규정하여 재가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.

<출처> 보건복지부, 2019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



노인학대의 유형

1. 신체적 학대 -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**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**

-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
-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
-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하는 행위
-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하는 행위
- 강제로 일을 강요하는 행위
-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
- 주먹 등으로 때리는 행위
-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위

2. 정서적 학대 - **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**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

-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하는 행위
-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행위
-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하는 행위
- 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에서 소외시키는 행위



노인학대의 유형

3. 성적 학대 -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나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
-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
-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하는 행위
-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

4. 경제적 학대 - 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,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,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하는 행위

- 허락없이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
- 허락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
-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



노인학대의 유형

5. 방임 -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(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,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,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)

-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
- 생활비가 없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 행위
-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해하거나 돌봄을 거부해서 생명이 위협받는 행위
-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하는 행위

6. 유기 -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-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 행위
-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
-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

7. 중복 학대 - 신체적 학대, 정서적 학대, 성적 학대, 경제적 학대, 방임, 자기방임 유형이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.



노인학대 예방- 요양보호사의 역할

- 1)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·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기
- 2)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
- 3)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하지 않기
- 4)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, 무시하거나, 조롱, 욕설을 해서는 안되며,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기
- 5)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됨
- 6)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,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기
- 7)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 제공하기

13



노인학대 대응방법 : 학대피해노인

❖ 응급상황



✓ 피신할 때 가져갈 물건: 현금, 신분증, 인감, 카드, 약

❖ 비응급상황



노인학대 신고전화
1577-1389

신고자의 비밀보장
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.
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)

14



노인학대 대응방법- 요양보호사의 역할

노인 학대를 목격 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

→ 신속히 바야다 재가센터(1670-1379)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(1577-1389), 수사기관 등에 상담 및 신고하기

요양보호사는 신고 의무자이며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. 만약,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(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6제2항 및 제61조의2제1항제2호).

- ① 노인 학대 사례 의뢰 시,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
- ②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*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 취하기(*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, 생명이 위급한 경우,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,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)
- ③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,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대처하기

